

(별표 3)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(제8조제4항 관련)

구 분	세 관 기 재 란
용도세율 적용, 관세감면, 분납승인물품	이 물품은 관세감면(분할납부, 용도세율적용)물품으로 【YYYY.MM.DD】(까지) 사후관리를 함.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. 관세청 통관포탈(unipass.customs.go.kr)에서 사후관리의무이행사항 및 사후관리물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.
재수출 면세·감면 물품	이 물품은 재수출조건부 (감)면세물품으로 【YYYY.MM.DD】까지 재수출하여야 함. 그렇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를 즉시 징수하게 됨.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 참조